

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증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480호)

심사보고서

1998. 6.

총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6. 10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8. 6. 11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8. 6. 19

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개정이유

- 지방공무원여비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 부터 시달림에 따라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여비지급 구분조항을 신설 군수는 부군수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제2호를 적용(안 제3조)
-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함.
-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일원화 함으로써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을 삭제함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로 부터 "지방공무원여비조례증개정조례표준안" 내시에 의한 것으로
- 군수의 여비지급 기준을 부군수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과
-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일원화 함으로써 국외여비 규정의 준용을 삭제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안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조치 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1998. 6. 1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